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 개정일자 : 2015. 12. 21

○ 시행일자 : 2015. 12. 23

◇ 개정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35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안 제3조의5 신설)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도록 함.
- 2)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철새

도래지에서 제외되었거나 지정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안 제5조 및 제6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을 축산 또는 수의학 분야와 관련된 60명 이내의 위원에서 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함.

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안 제9조의2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역교육의 내용에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및 차단방역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규정 (안 제22조의4 신설)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목을 제한하도록 한

경우라도 소독설비 및 전실, 울타리 등 방역시설 등을 갖추면 방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개정내용(조항)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3.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 소독조

⑤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가축전염병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법
3.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4.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5.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1.]